|  |  |  |
| --- | --- | --- |
| **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 또는 무상수증에 따른 영업세.개인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진일보 간소화·규범화할 것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5호  간정방권(簡政放權) 및 대중 용무처리의 편의 도모에 관한 국무원의 요구를 실행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진일보 경감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 또는 무상수증에 따른 영업세·개인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진일보 간소화, 규범화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 또는 무상수증에 따른 영업세·개인소득세 면제 수속을 이행하는 납세자는 <개인간 부동산 무상증여 등기표>, 양 당사자의 신분증명 원본과 복사본(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 상속자 또는 유증 수증자의 신분증명 원본과 복사본만 제출), 주택소유권증서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해당 증명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이혼합의서 또는 인민법원판결서 또는 인민법원조정서의 원본과 복사본;  ② 이혼증 원본과 복사본.  (2)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무상증여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배우자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결혼증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호적부 또는 출생증명서 또는 인민법원판결서 또는 인민법원조정서 또는 기타 부서(자격을 구비한 기구)가 발행한 양 당사자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비친족 양육·부양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판결서 또는 인민법원조정서 또는 향(鄕)·진(鎭)인민정부 또는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동사무소)가 발행한 양육(부양)관계 증명서류 또는 기타 부문(자격을 구비한 기구)가 발행한 양 당사자가 양육(부양)관계 증명서류 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 해야 한다.  (4)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주택소유권자 사망증명서의 원본과 복사본;  ② 공증을 거친 상속받을 권리 또는 유증받을 권리에 대한 증명서류의 원본과 복사본.  2. 세무기관은 상기 서류를 엄밀하게 심사해야 하며 서류가 완비되었고 정확하게 작성된 경우 <개인간 부동산 무상증여 등기표>상에 서명 및 날인하며 <개인간 부동산 무상증여 등기표>의 복사본과 관련 증명서류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납세자에게 반환하며 이와 동시에 세금면제 수속을 처리한다.  3. 각 지의 세무기관은 조세특혜 정책을 확실하게 실행함으로써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납세서비스 창구, 세무기관의 웹사이트, 12366 조세서비스 핫라인, 납세자 학원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조세특혜 정책의 규정과 업무처리 절차를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의 자문내용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답변하며 교육·지도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납세자가 여러 기관에 자문하고 여러번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조세 용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은 정부간 정보 공유를 통한 증명정보 조회의 방식으로 납세자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4.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의 개인 부동산 무상증여 조세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6]144호) 제1조 제1항의 '개인 부동산 증여의 영업세 조세관리 강화에 관한 문제'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11월 10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进一步简化和规范个人无偿赠与或受赠不动产免征营业税、个人所得税所需证明资料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75号  　　为落实国务院关于简政放权、方便群众办事的有关要求，进一步减轻纳税人负担，现就简化和规范个人无偿赠与或受赠不动产免征营业税、个人所得税所需的证明资料公告如下：  　 一、纳税人在办理个人无偿赠与或受赠不动产免征营业税、个人所得税手续时，应报送《个人无偿赠与不动产登记表》、双方当事人的身份证明原件及复印件（继承或接受遗赠的，只须提供继承人或接受遗赠人的身份证明原件及复印件）、房屋所有权证原件及复印件。属于以下四类情形之一的，还应分别提交相应证明资料：  　　（一）离婚分割财产的，应当提交：  　　1、离婚协议或者人民法院判决书或者人民法院调解书的原件及复印件；  　　2、离婚证原件及复印件。  　　（二）亲属之间无偿赠与的，应当提交：  　　1、无偿赠与配偶的，提交结婚证原件及复印件；  　　2、无偿赠与父母、子女、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兄弟姐妹的，提交户口簿或者出生证明或者人民法院判决书或者人民法院调解书或者其他部门（有资质的机构）出具的能够证明双方亲属关系的证明资料原件及复印件。  　　（三）无偿赠与非亲属抚养或赡养关系人的，应当提交：  　　人民法院判决书或者人民法院调解书或者乡镇政府或街道办事处出具的抚养（赡养）关系证明或者其他部门（有资质的机构）出具的能够证明双方抚养（赡养）关系的证明资料原件及复印件。  　　（四）继承或接受遗赠的，应当提交：  　　1、房屋产权所有人死亡证明原件及复印件；  　　2、经公证的能够证明有权继承或接受遗赠的证明资料原件及复印件。  　　二、税务机关应当认真核对上述资料，资料齐全并且填写正确的，在《个人无偿赠与不动产登记表》上签字盖章，留存《个人无偿赠与不动产登记表》复印件和有关证明资料复印件，原件退还纳税人，同时办理免税手续。  　　三、各地税务机关要不折不扣地落实税收优惠政策，维护纳税人的合法权益。要通过办税服务厅、税务网站、12366纳税服务热线、纳税人学堂等多种渠道，积极宣传税收优惠政策规定和办理程序，及时回应、准确答复纳税人咨询，做好培训辅导工作，避免纳税人多头找、多头跑，切实方便纳税人办理涉税事宜。有条件的地区可探索通过政府部门间信息交换共享，查询证明信息，减少纳税人报送资料。  　　四、本公告自公布之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房地产交易个人无偿赠与不动产税收管理有关问题的通知》（国税发〔2006〕144号）第一条第一款“关于加强个人无偿赠与不动产营业税税收管理问题”的规定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5年11月10日 |